발간등록번호
11-1210000-100034-10

국세청
WWW.NTS.GO.KR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상속·증여세

2026. 5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발간등록번호
11-1210000-100034-10

국세청 www.nts.go.kr/kyg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상속·증여세

2026. 5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머리말

AI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 중소·중견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은 가업상속 시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생전 승계에 활용할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가업승계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책자에는 최근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중심으로 Q&A와 계산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사항 등 실무상 유의할 내용을 함께 담아,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영농상속공제 제도도 함께 다루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안내책자가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5월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오 상 훈

목 차

제 1 장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

1.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 ····· 8
2. 상속세 과세제도 ····· 9
3. 증여세 과세제도 ····· 12
4. 세액의 계산 ····· 14
5.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편의 제도 ····· 15
6.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 16

참 고 ····· 18

-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 상속공제액
-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기본세율)
-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특례세율)

제 2 장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Ⅰ 가업상속공제 제도

1.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 24
2.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 36
3. 가업상속공제 금액 ····· 38
4.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 40
5.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 42
6.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50

KOR 국세청 WWW.NTS.GO.KR

Ⅱ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 54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 55
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 60
4.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 62
5.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 65

Ⅲ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1. 연부연납제도 ····· 66
2. 연부연납 신청 요건 ····· 66
3.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 ····· 67
4. 납세담보의 제공과 허가 ····· 68
5. 연부연납의 취소 ····· 69
6.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 70
7. 연부연납 가산금 ····· 71

Ⅳ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

1. 납부유예제도 ····· 73
2. 납부유예 신청 요건 ····· 74
3.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 ····· 75
4.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 77
5. 납부유예의 취소 ····· 81
6. 납부유예의 재허가 신청 ····· 82

목 차

제 3 장

기타 지원제도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 84
2.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 88
3.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 89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 95

Ⅱ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1. 주식·출자지분의 평가 ····· 96
2. 주식 등 할증평가 ····· 96
3. 중소기업 및 일정수준 중견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 98

Ⅲ 영농상속공제 제도

1. 영농상속공제 금액 ····· 99
2.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 100
3. 영농상속 입증서류의 제출 ····· 104
4.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시 공제배제 ····· 105
5.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 105

관련 서식 ····· 109

가업승계 Q & A

(상증 : 18의2-15-1) 가업상속공제 업종 요건 ····· 30
(상증 : 18의2-15-2·3·6·7) 가업영위기간 ····· 31
(상증 : 18의2-15-3) 피상속인 요건 ····· 33
(상증 : 18의2-15-3) 상속인 요건 ····· 35
(상증 : 18의2-15-11) 가업상속재산 ····· 37
(상증 : 18의2-15-12·13) 가업상속 사후의무(자산·지분유지) ····· 47
(상증 : 18의2-15-12·13)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고용유지) ····· 48
(조특 : 30의6-27의6-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 58
(조특 : 30의5-27의5-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 90
(상증 : 18의3-16-3) 영농상속공제 적용 요건 ····· 108

가업승계 요건검토표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 검토서 ····· 41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표 ····· 49
가업승계 증여세 사전요건 검토표 ····· 61
가업승계 증여세 사후요건 검토표 ····· 64

가업승계 계산사례 및 입증서류 등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입증서류 ····· 40
2인 이상이 가업주식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계산 ····· 57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 계산사례 ····· 5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시 입증서류 ····· 60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시 입증서류 ····· 90
영농상속공제 신청 시 입증서류 ····· 104



제1장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

가업승계 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가업승계는 기업주가 해당 가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업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02 상속세 과세제도

가. 납세의무자

-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각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인(相續人) :** 민법상 상속인을 말하며 생전 증여재산 등이 있어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유산을 수령한 특별연고자를 포함
>
> **수유자(受遺者) :**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사인증여(死因贈與) 계약에 따라 유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

나.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납세의무성립일)**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실종선고일)에 성립합니다.
- **(신고 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함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말함

(예시) 상속개시일 2026.3.10. : 상속세 신고기한 2026.9.30.

- **(납부 기한)**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법정 상속 순위 (민법 §1000·§1003)]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3순위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됨. 또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됨.

참고 [법정 상속분 예시(민법 §1009)]

구 분	상 속 인	민법상 법정상속분	
		상 속 분	배 분 율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장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 남 1 장 녀 1 배우자 1.5	2 / 7 2 / 7 3 / 7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 남 1 장 녀 1 차 남 1 차 녀 1 배우자 1.5	2 /11 2 /11 2 /11 2 /11 3 /11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부 1 모 1 배우자 1.5	2 / 7 2 / 7 3 / 7

다. 상속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 상속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 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주요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 상속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 상속세 신고·납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상담]

상속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 ☎ 126 ⇒ 2번 ⇒ 7번

03 증여세 과세제도

가. 납세의무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는 증여받은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
-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다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① 또는 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2)

** ① 특수관계인인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재산,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재산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산

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증여일 2026.1.10. : 증여세 신고기한 2026.4.30.

➡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증여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 증여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2)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4.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서식은 「국세청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주요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 증여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 증여세 신고·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증여세
※ 비회원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www.hometax.go.kr ⇒ 로그인 ⇒ 모의계산 ⇒ 상속세·증여세 자동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상담]

✔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 ☎ 126 ⇒ 2번 ⇒ 7번

04 세액의 계산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유증·사인증여재산 포함>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채무 등 + 사전증여재산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간주상속재산)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으로 추정한 재산 등

· (채무 등)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 등은 없는 것으로 함 (“0”)

·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니면 5년)에 증여한 재산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 채무)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등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합산대상 증여가액(1천만원 이상)

참고 [상속세·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상속·증여세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05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편의 제도

가. 분납제도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금을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으며, 2회분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부담 없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나. 연부연납제도

➡ 상속세·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연부연납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 물납제도

➡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만 물납가능)

- (요건) ① 상속재산(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신청기한 내 신청할 것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④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것
- 기한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으로는 물납할 수 없으나, 상장주식은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 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하고, 비상장주식은 납부할 상속세가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물납을 허용합니다.

* 비상장주식 및 상속받은 주택(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06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가. 3%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에 상당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누락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고세액 공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나.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연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세액×미납일수* × 가산세율(1일 22/100,000)

* 미납일수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 제외)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총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등)
※ 추정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사망전 1년(2년)이내에 2억(5억) 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국가·지자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가액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은 기간에 관계없이 합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배우자 상속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단, 위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 가능

−

감정평가수수료

※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과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그 해당세액에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40% 할증)
- 다만, 대습상속인 경우 제외

−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문화재자료 징수유예세액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

연부연납·물납·분납

↓

납부할상속세액

상속공제액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액은 아래 (① ~ ⑦ 합계)와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함.

공제의 종류	상속공제액
① 기초공제(상증법 §18) 가업·영농상속공제 (상증법 §18의2, §18의3)	○ 기초공제액 : **2억원** ○ 가업상속공제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300억원 ~ 600억원* 한도) *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10년이상 300억, 20년이상 400억, 30년 이상 600억 ○ 영농상속공제액 : 영농상속재산가액(공제한도 : 30억원)
② 그 밖의 인적공제 (상증법 §20)	○ 자녀공제 : 자녀(태아포함)수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태아포함)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자녀공제와 중복가능 ○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자녀·미성년자·연로자·배우자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③ 일괄공제 (상증법 §21)	○ 일괄공제액 : MAX (㉮, ㉯) ㉮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②의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적용 안 됨 * 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경우 : 일괄공제(5억원) 적용
④ 배우자 상속공제 (상증법 §19)	○ 배우자상속공제액 : MAX (㉮, ㉯) ㉮ MIN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총재산가액 – 비과세·채무 등) ㉡ 공제한도액 MIN (i , ii) i) (상속재산가액×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합산대상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ii) 30억원 ㉯ **5억원** * ㉮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시 적용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재산분할기한 경과 후 6개월 되는 날까지 신고)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증법 §22)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이 ○ 2천만원 초과시 : MIN (㉮, ㉯) ㉮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 2억원 ○ 2천만원 미만시 : 그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⑥ 재해손실 공제 (상증법 §23)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멸실·훼손된 손실가액
⑦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법 §23의2)	[상속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 (6억원 한도)
⑧ 공제 적용의 한도 (상증법 §24)	상속세 과세가액 –【①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②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③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과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기본세율)

〈 기본세율 〉 –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증 여 재 산 가 액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목적 출연재산 등)

–

채 무 부 담 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채무 등)

+

증여재산가산액

※ 당해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사실혼 제외)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 한도액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 4촌이내 혈족 및 3촌이내 인척
–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 혼인 전후 2년이내 증여재산, 출산 후 2년내 증여재산, 혼인+출산 한도 1억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

증 여 세 과 세 표 준

X

세 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	4억6천만

↓

산 출 세 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 대 생 략 할 증 과 세 액

※ 세대생략 증여시 30%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수증한 경우 40% 할증)
–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세대생략 증여시 제외

–

세 액 공 제 등

※ 신고세액공제·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문화재자료 징수유예세액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

연부연납 · 분납

※ 물납 불가

↓

납부할 증여세액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특례세율)

〈 특례세율 〉 –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적용 재산

증여재산가액	※ 해당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
–	
채무부담액	
↓	
증여세 과세가액	
+	
기과세특례 적용된 과세가액	※ 특례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은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과세가액의 합계액임 – 가업승계 주식은 600억원 한도 – 창업자금은 50억원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100억원) 한도
–	
증여공제	※ 10억원(창업자금은 5억원)
–	
감정평가수수료	※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	
증여세 과세표준	
×	
세 율	※ 특례세율 – 가업승계 주식 :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 – 창업자금 : 10%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등	※ 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조특법 §30의5⑪·§30의6⑤)
↓	
납부할 증여세액	



제2장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왔으며,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증여세 제도 요약

가. 가업상속공제제도(상증법 §18의2)		
혜택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300억원, (20년 이상)400억원, (30년 이상)600억원 한도	
요건	피상속인	· 최소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보유
	상속인	·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
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조특법 §30의6)		
혜택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20억원까지 10%(12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300억원, (20년 이상)400억원, (30년 이상)600억원 한도	
요건	증여자	·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수증인	· 18세 이상 거주자(자녀)
다.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상증법 §71)		
혜택	(가업상속) 총상속세 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은 20년 분할납부(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 (가업승계) 총증여세 중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해당분은 15년 분할납부	
요건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라.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상증법 §72의2, 조특법 §30의7)		
혜택	가업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 ※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요건	중소기업	

Ⅰ. 가업상속공제 제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01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요 건	기 준	상 세 내 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소기업이 아닐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1)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2) 10년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인의 상속세액 × 2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가. 10년이상 영위한 가업요건 충족

1) 가업의 규모 및 업종요건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요건 (상증령 §15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호 및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요건 (상증령 §15②)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납부능력 요건)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1호 및 3호 요건(중견기업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2) 가업경영기간 요건

➡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해야 합니다.

-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2. 28.〉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 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 ~ 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 ~ 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 ~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자. 정보통신업 (58 ~ 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 ~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 (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Q 응급환자이송에 대한 용역수입이 전체의 40%, 산불진화용역 28%, 화물운송용역 17% 등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응급환자이송)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3.30.)

Q 100% 지분을 보유하는 해외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면 5천억원을 초과하지만 포함하지 않으면 5천억원 미만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견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종속기업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상증법에 따른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 시에는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2017.4.12.)

Q 당사는 상장법인으로 여러 관계기업이 있는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중견기업의 매출액기준 5천억원 계산 시 관계기업 매출을 합산해야하나요?

A 상속이 개시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은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서면-2016-상속증여-3565, 2019.5.28.)

Q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주식 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면-2019-법규재산-2914, 2022.5.31.)

Q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사업으로 전환하면 가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개인사업자로서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종전에는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기재부 예규 변경

Q 의류 제조업에서 식품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하는 경우 의류 제조업 영위 기간도 가업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A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표상 **동일한 대분류(제조업) 내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의류 제조업의 영위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상증령 §15③(1)나목)
예 : (제조업)음료 → (제조업)자동차 부품 : 대분류 내 업종변경으로 영위기간 **합산**
(도매업)의류 → (제조업)의류 : 대분류 간 업종변경으로 영위기간 **합산 불가**

Q 제조업은 10년 이상 영위하였지만 부업종으로 도매업을 추가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요?

A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업상속 대상기업의 주된 사업(제조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Q 법인가업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의 주식수와 합하여 40%* 초과하는 **최대주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가업의 경영에 참가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3-432, 2014.01.22.)

*종전에는 50%(상장법인 30%)였으나, '23.1.1.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지분율 40%(상장법인 20%)로 개정

나. 피상속인 요건 충족(모두 충족)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

② 법인 가업은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지분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최대주주 등"이란?

-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과 그의 특수 관계인 모두를 말함

☞ 피상속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③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함)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④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1명으로 제한됩니다.

- A와 B는 중소기업(甲)의 최대주주, a는 A의 상속인인 경우

☞ 가업의 최대주주 1명(A)이 사망하여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다른 주주 B(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 a는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불가
(상증령 §15③단서)

Q 피상속인이 전문경영인과 각자 공동대표이사로 되어있던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A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재산세과-172, 2011.04.01.)

Q 8년 대표이사 재직 후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후 재취임하여 5년간 대표이사 재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요?

A 연속된 10년 이상이 아니라 가업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10년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 2021.02.24.)

Q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사망 시까지 회사를 경영해야 할까요?

A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

※ 종전에는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기재부 예규 변경

Q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에도 지분율을 계속 40%이상 유지해야 할까요?

A 상장 전에는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 수 등의 100분의 40,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는 100분의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
(법령해석과-137, 2015.02.06.)

* 종전에는 50%(상장법인 30%)였으나, '23.1.1.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지분율 40%(상장법인 20%)로 개정

다. 상속인 요건 충족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자 요건 없음(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수증자가 거주자여야 함)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다만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④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사후관리기간에 확정되는 경우 추징)

상속인의 배우자가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상증령 §15③2)

※ 개인사업자도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3)

여기서 잠깐!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 준비해야 하나요?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동안 가업을 경영하고, 최대주주로서 주식 40%이상(상장기업 20%) 계속 보유하여야 하므로 최소 10년 이상은 준비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Q&A | (상증)18의2-15-3 | 상속인 요건

Q 상속인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요?

A **다른 사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가업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며(재산세과-649, 2010.08.27.),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한 경우 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2015.04.16.)

Q 가업을 3명의 자식에게 공동상속 가능한가요?

A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각각의 자녀가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7-상속증여-2203, 2018.02.21.)
※ 종전에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적용하였으나, '16.2.5. 이후 상속개시되는 분부터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는 요건이 폐지됨으로써 공동상속이 허용됨

Q 2개 이상의 가업을 자녀 2명에게 각각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요?

A 각각의 자녀가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가업 모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면-2016-상속증여-3616, 2016.05.17.)

【가업상속 개정연혁】

구 분	2011.1.1. 이전	2011~2016.2.4.	2016.2.5. 이후
피상속인	부모 모두 가능	부모 중 1명만 가능	
상속인	1명만 가능		2명 이상 가능

【가업승계 증여세 개정연혁】

구 분	2010.12.31. 이전	2011~2019년	2020.1.1. 이후
증여자	부모 모두 가능	부모 중 1명만 가능	
수증자	2명 이상 가능	1명만 가능	2명 이상 가능

※ 1개 가업을 부모가 공동경영하고 가업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가정

02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상속 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으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의 경우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비사업용 토지 제외),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의 경우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사업무관자산 비율 제외)을 말합니다.

【가업상속재산가액】

개인가업	법인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	주식·출자지분 × [1 - (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

① 법인세법 §55의2(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② 법인세법 시행령 §49(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다만,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임직원* 사택 제외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 및 최대주주의 친족등인 임직원 제외

③ 법인세법 시행령 §61①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다만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과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 제외

④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200% 초과)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과다보유현금 제외)

가업승계 Q&A | (상증)18의2-15-11 | 가업상속재산

Q 상속받은 주식 중 10,000주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 5,000주는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식은 몇 주인가요?

A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어 15,000주 모두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

※ 종전에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을 공제대상으로 해석하였으나, 기재부 예규 변경

Q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 하나요?

A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2020.10.15.)

※ 다만 상증령 §15⑤ 개정('25.02.28)으로 임직원(자녀 포함)의 학자금 및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

Q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 하나요?

A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

Q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나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03.12.)

03 가업상속공제 금액

가. 일반적인 가업상속공제 한도

➡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금액 한도 개정 내용

사업영위기간	공 제 금 액	
	'18.1.1. ~ '22.12.31	'23.1.1 이후
10년 이상	200억원	3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600억원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2026년 기준)

-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700억원이며
-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구 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700억원	상속 재산가액	700억원
없음	**가업상속공제액**	**(600억원)**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69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95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세 율	50%(누진공제 4.6억원)
342억 9,000만원	산출세액	42억 9,000만원
(10억 2,870만원)	신고세액 공제	(1억 2,870만원)
332억 6,130만원	**자진납부 세액**	**41억 6,130만원**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291억원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나. 2개 이상의 가업상속 시 상속공제 금액 계산방법

➡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을 영위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공제한도 금액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가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둘 이상 가업 영위 시 공제한도 및 순서】 상증칙 §5

①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적용하며,
②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적용사례

가업상속재산가액 공제대상금액이 30년을 영위한 A기업은 50억원이고, 10년을 영위한 B기업은 400억원인 경우 350억원 공제

공제금액 : 350억원【(MIN(①,②)】

① 경영기간 가장 긴 A기업 한도 : 600억원

② 경영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부터 순차 공제 : 350억원(ⓐ + ⓑ)

ⓐ A기업 상속재산 : 50억원 → 전액공제

ⓑ B기업 상속재산 : 400억원 → 300억원 공제

→ ∴ 300억원[=MIN(600억원-50억원, 10년을 영위한 기업의 한도액 300억원)]

다. 가업상속공제의 배제(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②)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 ① ≤ ②

①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 외 상속재산가액

②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 × 2

*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하여 계산한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04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업승계 입증 서류 —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입증서류**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속일 전 10년 이상)
2. 주주명부(상속일 현재)
3. 법인등기부등본
4. 가업 직접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급여지급, 4대보험 징수, 업무수행관련 내부결재서류 등)
5. 기준고용인원 및 기준총급여액 계산 내역
6. 주식평가 보고서(비상장 주식인 경우)
7. 사업용 자산 비율 계산 내역
   (과다보유현금 검토서, 사업무관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등)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 검토표

구 분		검 토 항 목	충족 여부
가업요건	공통	①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가업상속은 개인사업자도 가능)	여/부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여/부
		③ 10년 이내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 따른 죄(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여/부
	중소기업	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여/부
		② 조특령 §2①1,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여/부
	중견기업	①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여/부
		② 조특령 §9④1, 3호 요건(독립성 기준)을 충족	여/부

⇒ 10년 이상 가업 해당업종 영위 & 매출액 5천억원 이하 & 독립성 기준 충족 필요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	**※ ① ~ ③ 중 하나의 기간동안 대표이사 등 재직하면 요건 충족**	여/부
	① 가업영위기간 중 50%이상 기간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이상 기간	
	③ 가업기간중 10년이상 기간(상속인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등 직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주식보유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비상장기업은 40% (상장기업 20%)이상 주식 10년 이상 계속 보유	여/부
가업 승계자 (상속인)	① 18세 이상	여/부
	②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여/부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여/부
	④ (중견기업 해당 시)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여/부

(검토내용)
모든 항목 충족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05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재계산·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 상당액

$$\text{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액} \times \text{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의 일수} \times \frac{3.1\%^{*}}{365}$$

* 상속세 부과당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2023년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는 2023.1.1.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업상속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단축기간 5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란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⑤).

1)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한 경우

*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분류 외 변경 허용)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참고 [대분류 내 업종변경 예시]

- **플라스틱 욕실자재**(중분류 22) → **절수형 양변기**(중분류 23)
- **전기차 축전지**(중분류 28) → **자동차 부품제조**(중분류 30)
- **전자부품 제조**(중분류 26) → **산업용 로봇**(중분류 29)

〈한국 표준산업분류(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
	음료제조업	알콜음료제조업 / 비알콜음료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상품 중개업 /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생활용품 도매업 …
	소매업; 자동차제외	종합 소매업 /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
	…	

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해당 법인의 감자로 인해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단, 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4)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5년 후 판단)

①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②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⑱)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다.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였더라도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⑧)

1)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

①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④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⑤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⑥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⑦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①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②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③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①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②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③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④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⑤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증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⑦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⑧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가업승계 Q&A (상증)18의2-15-12·13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자산·지분유지)

Q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9-상속증여-3357, 2020.04.21.)

Q 기존 지분 18%와 가업상속받은 지분 76%를 합한 94% 보유하던 중 사후관리 기간 중 기존주식(5%) 처분으로 상속인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지분유지 요건 위반에 해당하나요?

A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

Q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서면-2021-상속증여-2055, 2021.04.29.)

* 종전 7년에서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 포함)은 5년으로 개정

가업승계 Q&A (상증)18의2-15-12·13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고용유지)

Q 월별 근로자 수가 다른데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정규직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 2016.10.26.)

Q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 사업장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 시 상속인도 포함되나요?

A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서면-2022-법규재산-0547, 2023.03.15.)

Q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의 매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매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 2017.08.30.)

Q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 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피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 2016.09.28.)

Q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기준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 2020.05.21.)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표

검토항목	검토내용	적격 여부	
1. 사후관리기간 경과 여부 (사후관리 기간 : 5년)		경과 □	미경과 □
㉮ 상속개시일	. .		
㉯ 정당한 사유로 인한 미종사 기간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정당한 사유로 가업 미종사시 해당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 연장)	. . ~ . .		
㉰ 사후관리기간 종료예정일	. .		
2. 가업용 자산기준 이상 처분(임대 포함) 여부		적 □	부 □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가액	원		
㉯ 가업용자산 중 처분자산가액	원		
㉰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40% 이상 처분 금지)	%		
㉱ 정당한 사유 유무			
3. 가업 종사 여부		적 □	부 □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내 대표이사 취임 여부			
㉯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여부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등 상증령 §15⑪)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무실적 포함) 또는 폐업 여부			
㉱ 정당한 사유 유무(상속인 사망 등)			
4. 상속인 지분 감소 여부		적 □	부 □
㉮ 가업상속 후 상속인 지분	%		
㉯ 사후관리 기간 중 상속인 지분	%		
㉰ 상속인의 지분 감소 여부			
㉱ 정당한 사유 유무 (상증령 §15⑧3 해당하는 지분감소의 경우 사후의무 위반 아님)			
5. 고용요건 충족 여부(근로자 수 기준과 총급여액 기준 중 선택 가능)		적 □	부 □
㉮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액) 평균	명 (원)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	명 (원)		
㉰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액) 비율	% %		
6.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적 □	부 □

06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취득시기 계산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이월과세를 도입하였습니다.(소득세법 §97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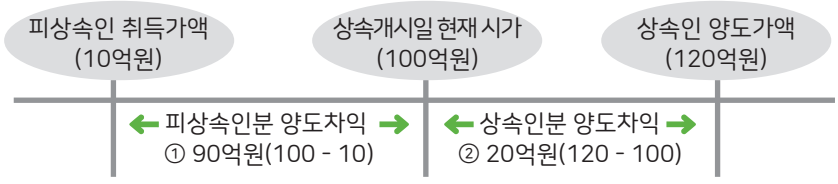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과 ㉡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가업상속공제적용률)

-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참고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100%인 경우를 가정



-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차익 : 110억원(①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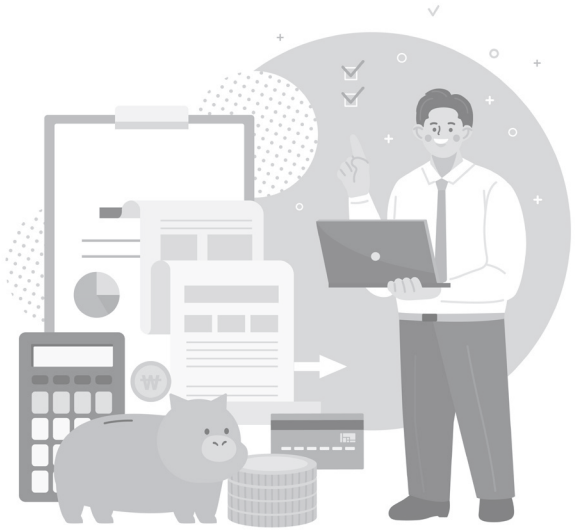
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추징세액을 조정합니다.

※ 양도소득세 상당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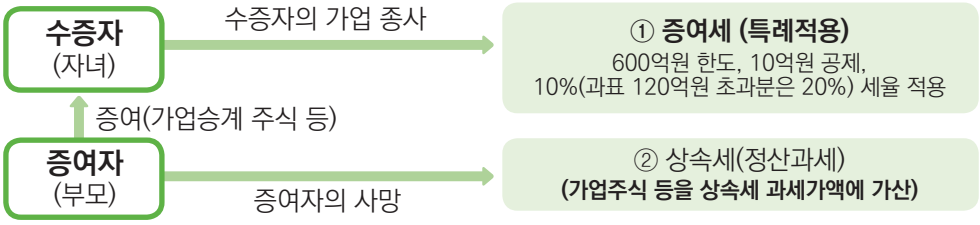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적용)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 적용)]

*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함



Ⅱ.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26년 주요 세법개정 내용

조 항	개정 전	개정 후
조특령 §27의6 ⑧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이후 상장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합산적용* 한도** * 당초 증여 주식의 과세가액 + 상장에 따른 이익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 **적용세율** : (120억원 이하) 10%, (120억원 초과) 20% - **가업영위기간별 한도** :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100억원	**합산적용 한도 합리화** •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사 례 **일반적 증여와 가업승계주식 특례적용 증여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甲) 주식 8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 중소기업(甲)은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100% 임

① 주식증여가액이 70억원인 경우

일반적 증여인 경우	구 분	특례적용 대상인 경우
70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70억원
(0.5억원)	증 여 공 제	(10억원)
69.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60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세 율	10%(120억원 초과분은 20%)
30억 1,500만원	산 출 세 액	6억원
(9,045만원)	신고세액 공제	-
29억 2,455만원	**자진납부 세액**	**6억원**

***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23억 2,4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② 주식증여가액이 600억원인 경우

일반적 증여인 경우	구 분	특례적용 대상인 경우
600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600억원
(0.5억원)	증 여 공 제	(10억원)
599.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590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세 율	10%(120억원 초과분은 20%)
295억 1,500만원	산 출 세 액	106억원
(8억 8,545만원)	신고세액 공제	-
286억 2,955만원	**자진납부 세액**	**106억원**

증여세 산출세액(106억원) = [120억원×10%]+[(590억-120억원)×20%]

***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180억 2,9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0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가.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나. 증여자 요건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② 가업 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③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상장법인은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요건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0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가. 일반증여와 차이점

①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300억원, (20년 이상)400억원, (30년 이상)600억원 한도

- 이 경우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며, 합산한 결과 6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 ~ 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가업자산상당액 : 증여한 주식가액 × $\left(1 - \frac{\text{업무무관 자산가액}}{\text{총 자산가액}}\right)$

②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외의 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주식과,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과 합산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가액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참고 [일반증여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 분	일반적인 증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공제	5천만원	10억원
세 율	10~50%	10~20%(600억원 한도)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가능	불가능
상속재산 가산	10년 내 증여받은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가산

나. 가업을 2인 이상이 승계한 경우의 증여세 계산(p57 계산사례참조)

①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산출된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②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다. 기타 과세특례적용 방법

①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 가액과 합산하여 600억원 한도*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300억원, (20년 이상)400억원, (30년 이상)600억원 한도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③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그 중 1인의 자녀에게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주주들 중 1인(A)이 먼저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한 경우 다른 주주(B)는 자녀에게 가업주식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가업승계 계산사례

2인 이상이 가업주식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계산

가. 동시 증여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가업 경영자인 부친 甲이 소유한 주식을 자녀 A에게 '26.4.2. 300억원, 자녀 B에게 200억원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1)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가정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증여세 과세가액 : 500억원(A주식 + B주식)
- 증여세 과세표준 : 500억원 − 10억원 = 490억원
- 증여세 산출세액 : ① + ② = 86억원
  ① 120억원 × 10% ⇒ 12억원
  ② (490억원 − 120억원)×20% ⇒ 74억원

(2) 각 거주자별 납부할 증여세액 계산

- A가 납부할 증여세액 : 86억원×300/500=51.6억원
- B가 납부할 증여세액 : 86억원×200/500=34.4억원

나. 순차 증여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가업 경영자인 부친 甲이 소유한 주식을 자녀 A에게 '26.4.2. 300억원, 자녀 B에게 '26.6.2. 200억원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1) 1차 증여시 A가 납부할 증여세액 계산

- 증여세 과세가액 : 300억원
- 과세표준 : 300억원 − 10억원 = 290억원
- 증여세 산출세액 : ① + ② = 46억원
  ① 120억원 × 10% ⇒ 12억원
  ② (290억원 − 120억원)×20% ⇒ 34억원

(2) 2차 증여시 B가 납부할 증여세액 계산

- 증여세 과세가액 : 500억원(A주식 + B주식)
- 증여세 과세표준 : 500억원 − 10억원 = 490억원
- 증여세 산출세액 : ① + ② = 86억원
  ① 120억원 × 10% ⇒ 12억원
  ② (490억원 − 120억원)×20% ⇒ 74억원
- B가 납부할 증여세액 : 86억원 − 46억원(A기납부세액) = 40억원

Q 부모로부터 각각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모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의 승계 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서면-2020-상속증여-0694, 2020.06.03.)

→ 부모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으로 부(50%)가 자녀에게 증여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받은 후, 가업 승계 당시 다른 최대주주인 모(30%)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는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Q 자녀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주식을 증여해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되는지?

A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26, 2010. 5. 25.)

Q 부친이 가업 주식 전부를 증여한 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 주식 보유요건을 제외한 가업상속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할까요?

A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 전부를 증여해서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조특령 §27의6⑨1단서조항)

※ '20.2.11. 이후 증여자(피상속인)가 모든 주식 증여 후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주의) 다만,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부모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11.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1, 2021.03.26.)

여기서 잠깐! 2022.1.1.에 가업상속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기간 종료일은?

2023.1.1.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어 사후관리기간은 5년이며 2026.12.31.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됩니다.

가업승계 계산사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 계산사례

Q 설립 후 3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A가 가업승계하는 경우

※ A가 회사 지분 100%를 보유중이며 1주당 평가액 1,000,000원, 주식 수 100,000주로 15년 후 기업가치의 상승으로 평가액은 주당 2,000,000원으로 예상
(가업승계 증여 당시 사업무관자산 비율은 40%, 15년 후 가업상속 시 합산되는 가업승계 증여재산의 사업무관자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

① 2026.4.1. 전체 지분율 100%를 자녀에게 가업승계 시 세부담

증여방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구 분	특례 적용	일반(사업무관자산분)
주식수	100,000주	
주식가액	1,000,000원	
증여대상 기업 가치	1,000억원	
증여재산가액	600억원	400억원
증여공제	(10억원)	(0.5억원)
과세표준	590억원	399.5억원
세율	10%(120억원 초과분은 20%)	50%(누진공제 4.6억원)
산출세액	106억원	195.1억원
신고세액 공제(3%)		5.8억원
납부세액	106억원	189.3억원
총 세액	**295.3억원**	

② 가업승계 15년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세액비교*

* 가업주식 외 다른 재산은 없으며, 일괄공제만 적용한 경우

구 분	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② 가업승계 증여 특례 적용 없이 가업상속만 적용
증여특례재산	600억원	-
사전증여재산	-	-
총 상속재산	600억원	2,000억원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가업상속공제	(595억원)	(600억원)
과세표준	-	1,395억원
세율	50%(누진공제 4.6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산출세액	-	692.9억원
증여세액공제	(106억원)	-
신고세액공제	-	(20.8억원)
납부세액	-	672.1억원
총부담세액	**① 295.3억원 (증여세만 납부)**	**③ 672.1억원 (증여세+상속세 납부)**

※ 위 계산사례와 같이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 이후 큰 폭의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이 유리합니다.
다만, 기업여건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 과세특례가 유리한지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유리한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0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가업승계 입증서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시 입증서류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증여일 전 10년 이상)
2. 주주명부(증여일 현재)
3. 법인등기부등본
4. 가업 직접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급여지급, 4대보험 징수, 업무수행관련 내부결재서류 등)
5. 주식평가 보고서(비상장 주식인 경우)
6. 사업용자산비율 계산 내역
   (과다보유현금 검토서, 사업무관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전요건 검토표

구 분		검 토 항 목	충족 여부
가업요건	공통	① 법인사업자 여부	여/부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여/부
		③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여/부
		④ 10년 이내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죄(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여/부
	중소기업	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여/부
		② 조특령 §2①1,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여/부
	중견기업	①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여/부
		② 조특령 §9④1, 3호 요건(독립성 기준)을 충족	여/부

⇒ 10년 이상 가업 해당업종 영위 & 매출액 5천억원 이하 & 독립성 기준 충족 필요

증여자	① 60세 이상 부모	여/부
	②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다음 하나의 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 -가업영위기간의 50%이상 또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여/부
주식보유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비상장기업은 40% (상장기업 20%)이상 주식 10년 이상 계속 보유	여/부
가업승계자(상속인)	① 18세 이상	여/부
	②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여/부
	②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여/부

(검토내용)
모든 항목 충족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능

04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가. 증여 후 가업승계 불이행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

-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 상당액

$$\text{결정한 증여세액} \times \text{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frac{2.2^{*}}{10,000}$$

* '22.2.14. 이전 기간은 2.5/10,000

나.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1)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 수증자(배우자 포함)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대분류 외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2015. 2. 3.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면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요건 검토표

검토항목	검토내용	적격 여부	
1. 사후관리기간 경과 여부 (사후관리 기간 : 5년)			
㉮ 증여일	. .	경과 □	미경과 □
㉯ 정당한 사유로 인한 미종사 기간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정당한 사유로 가업 미종사시 해당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 연장)	. . ~ . .		
㉰ 사후관리기간 종료예정일	. .		
2. 가업 종사 여부			
㉮ 증여일부터 3년내 대표이사 취임 여부			
㉯ 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 유지 여부		적 □	부 □
㉰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여부(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등 상증령 §15⑪)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무실적 포함) 또는 폐업 여부			
3. 수증자 지분 감소 여부			
㉮ 증여일 현재 수증인 지분	%		
㉯ 사후관리 기간 중 수증인 지분	%	적 □	부 □
㉰ 수증자의 지분 감소 여부			
㉱ 정당한 사유 유무 (조특령 §27의6⑦ 해당하는 지분감소의 경우 사후의무 위반 아님)			
4.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적 □	부 □

05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의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어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가업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승계할 수 있도록 최대 600억원 한도내에서 10%에서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 분			사후 가업상속	사전 가업승계
가업상속승계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한도		최대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최대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기본공제		-	10억원
	세율		상속세율(10 ~ 50%)	과세표준 120억 이하 : 10% 120억 초과 : 20%
	피상속인 요건 (증여자)		최대주주 & 지분40%(상장20%)이상 10년 보유	최대주주 & 지분40%(상장20%)이상 10년 보유
	사후관리	기간	5년	5년
		업종	대분류 내 변경허용	대분류 내 변경허용
		고용	근로자수(총급여)5년 평균 90% 유지	없음
		자산	40%이상 처분금지	없음
		지분	상속받은 지분 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납부유예			납부유예 선택가능(중소기업)	납부유예 선택가능(중소기업)
연부연납			20년(10년거치10년납부) 적용	15년 적용

Ⅲ.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이나,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

01 연부연납제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합니다.

02 연부연납 신청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함

② 과세표준 신고기한(기한후 신고 포함)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03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수정신고서 제출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납부에 대한 납부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부연납 신청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가.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② 허가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나. 기한후 및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② 허가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다.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① 신청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② 허가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연부연납 신청자에 대하여 허가통지 기한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04 납세담보의 제공과 허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의 신청 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 시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별도의 연부연납 허가통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 금전
② 국채 또는 지방채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④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참고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의 통지기한]

연부연납 신청대상 세액 구분	신 청 기 한	허가통지 기한
·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할 세액	신고기한 이내	상속세 :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 신고기한부터 6개월
· 기한 후(수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	기한후(수정) 신고 시 (결정통지 전)	상속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증여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세액 · 무신고자나 미달신고자의 신고세액을 초과한 고지세액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 증여자 연대납세 의무에 의하여 납부하는 증여세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 연부연납 신청 시 특정 납세담보물을 함께 제공한 경우	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05 연부연납의 취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1④)

①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납부 예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①)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해당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미납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미납자가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 세액은 일시에 징수함 (상증령 §68⑧)

* 위 ④에 해당되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허가일로부터 10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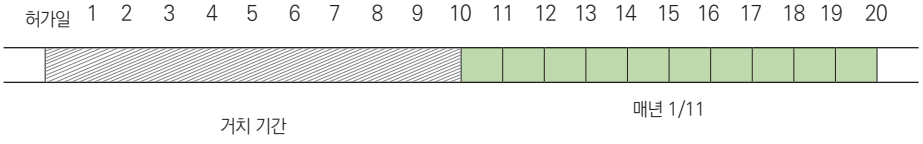
06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하여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연부연납기간은 최장 20년이며 10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거치기간 선택 시) 연부연납 신청 시에 납부하지 않고 거치기한 경과 후 납부합니다.

10년 거치 선택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11씩 10년간 분할납부



거치 미선택 허가 후 매년 1/21씩 20년간 분할납부



➡ 연부연납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의 계산

$$\left[\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가업상속재산} - \text{가업상속공제액}}{\text{총상속재산가액} - \text{가업상속공제액}}\right] \times \frac{1}{(\text{연부연납기간} + 1)}$$

참고 [연부연납 기간]

세 목			연부연납기간	
			'08.1.1. ~ '22.12.31 상속·증여분	'23.1.1 이후 상속·증여분
상속세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 10년간 분할납부 (3년 거치 가능)	· 20년간 분할납부 (10년 거치 가능) ※ 가업상속재산 비율 관계없이 적용
		50% 이상	·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일반상속재산		· 10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22.1.1. 이후 상속분부터	
증여세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재산		· 1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이전, 5년 적용)	
	일반증여재산		·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07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납부일 현재의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합니다.(p.72 계산방법 ③ 참조)

* 종전에는 가산율이 중도에 변경되었더라도 분납 전체기간의 일수에 납부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하였으나, '23.2.28.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안분하여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방법

① 첫 회분 납부할 가산금

연부연납 총세액 × 납부기한(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첫 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 납부일 현재 연부연납가산율

② 첫 회분 이후 납부할 가산금

[연부연납 총세액 −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 (연부연납 잔여세액) × 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분납기한까지의 일수 × 납부일 현재 연부연납가산율

③ '25.3.21.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25.3.31.납기 연부연납 가산금(3.5% → 3.1%)

[연부연납 잔여세액 × '23.4.1. ~ '24.3.21.까지 일수 × 2.9%] + [연부연납 잔여세액 × '24.3.22. ~ '25.3.20.까지 일수 × 3.5%]

+ [연부연납 잔여세액 × '25.3.21. ~ '25.3.31.까지 일수 × 3.1%]

참고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8.3.19.~ '19.3.19.	'19.3.20.~ '20.3.12.	'20.3.13.~ '21.3.15.	'21.3.16.~ '23.3.19.	'23.3.20~ '24.3.21.	'24.3.22~ '25.3.20.	'25.3.21.~
연 1.8%	연 2.1%	연 1.8%	연 1.2%	연 2.9%	연 3.5%	연 3.1%

Ⅳ.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

01 납부유예제도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3년 상속(증여)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증여) 받은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2 의2, 조세특례제한법 §30의7)

① 상속세 납부유예세액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가업상속재산}}{\text{총 상속재산가액}}$$

② 증여세 납부유예세액

$$\text{증여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가업자산상당액}}{\text{총 증여재산가액}}$$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제도는 기존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비해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가업과 지분요건만 유지하면 되며 업종 유지 요건은 없습니다. 즉, 업종을 변경해도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에도 사후관리 기간 5년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70% 이상을 유지(가업상속공제의 경우 90%이상 유지하여야 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미래에 업종 변경이 필요하거나 종업원을 10% 이상 감원해야 하는 경우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다음 상속 시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02 납부유예 신청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을 상속받았을 것(가업상속공제 준용)

②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포함)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았을 것(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 준용)

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03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

가.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기한

➧ 납부유예의 신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수정신고서 제출 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② 허가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2) 기한후 및 수정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기한 후·수정신고 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② 허가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3)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② 허가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나. 납부유예 신청 시 제출서류

➡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9의2①)

- 납부유예 신청서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시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식지분이 감소하였으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아 납부유예 재신청시 해당)
-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가업을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유예 신청시 해당)

다. 납세담보의 제공

➡ 납부유예신청 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 **(금전·유가증권)**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제출,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
-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인감증명서 등 첨부) 제출
-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기(등록)필증을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04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납부유예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 상속인이나 수증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를 재계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

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고 각 항목에 따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으로서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text{납부유예된 세액} \times \frac{\text{감소한 지분율}}{\text{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④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상증령 §15⑬)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 (상증령 §15⑭)

➡ 이 경우 상속세에 추가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 상당액

$$\text{추징되는 납부유예세액} \times \text{당초 상속받은 가업자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frac{3.1\%^{*}}{365}$$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2)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항목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수증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text{납부유예된 세액} \times \frac{\text{감소한 지분율}}{\text{증여일 현재 지분율}}$$

③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조특령 §27의7⑪)

㉡ 증여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 (조특령 §27의7⑫)

➡ 이 경우 증여세에 추가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 상당액

$$\text{추징되는 납부유예세액} \times \text{당초 증여받은 가업주식등에 대한 증여세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frac{3.1\%^{*}}{365}$$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납부유예를 적용받은 자가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5 납부유예의 취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2의2⑤, 「조세특례제한법」 §30의7⑤)

①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①)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자 상당액

$$\text{취소(변경)되는 납부유예세액} \times \text{가업자산(주식)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frac{3.1\%^{*}}{365}$$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06 납부유예의 재허가 신청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세액과 이자상당액에 대한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7⑥)

①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0의6)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조특법 §30의7)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또는 수증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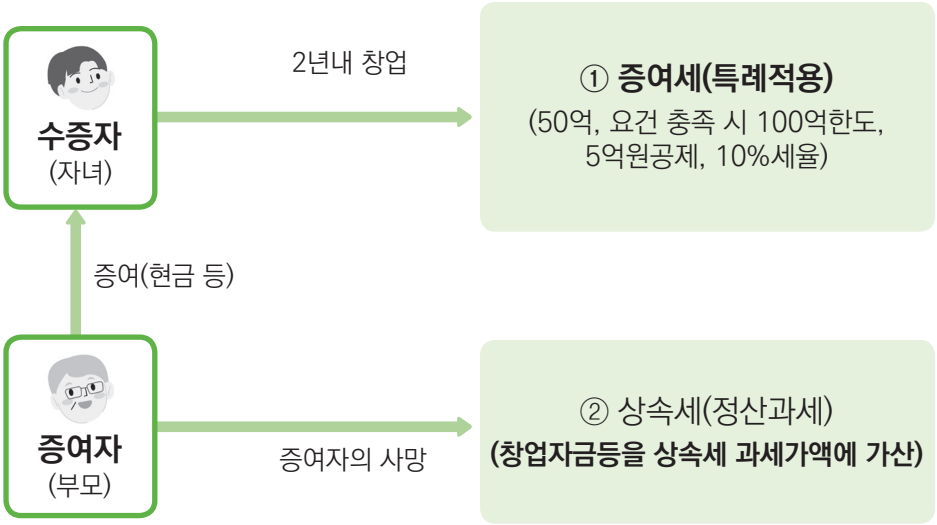




제3장 기타 지원제도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5)



0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수증자 요건

➡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장남과 장녀에게 5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

나.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다. 증여 물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라. 과세특례 신청 요건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마. 창업중소기업

1) 창업의 범위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

②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④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⑤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창업의 기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4) 창업자금의 사용기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조특법 제6조제3항)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02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①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5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⑥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03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가.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함

➡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text{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text{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금액} \times \frac{3}{1{,}000}$$

*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한도

창업자금 제출서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시 입증서류

창업자금 사용명세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6서식 및 부표작성]

창업자금 Q&A

(조특)30의5-27의5-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Q **A장소에서 주유소를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 별도의 B장소에서 창업자금으로 토지와 건물 및 주유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서면4팀-3160, 2006.9.14.)

Q **자기의 임대건물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서면-2017-상속증여-0050,2017.01.24.)

Q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 당초 창업자금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재산세과-247,2012.7.4.)

Q **사업자등록 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생산시설을 마련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 **사업자등록 후**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재산세과-446,2012.12.10)

나. 사후 의무이행 위반 시 증여세 추정

➧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2.2/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①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체 과세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해당 업종 외의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은 과세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은 과세

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 계산산식**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 수 - 10명)

다.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나항 ⑥의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②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

➧ 다음의 경우는 위 ⑥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①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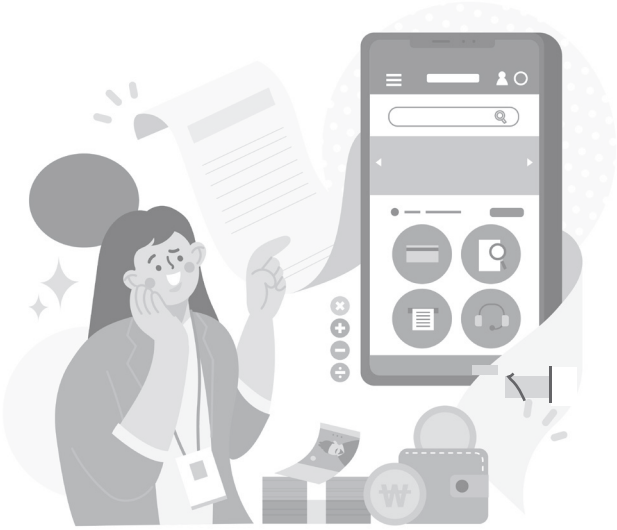
라. 증여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가산

➡ 창업자금의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이자 상당액

$$\text{결정한 증여세액} \times \text{증여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frac{2.2^{*}}{10{,}000}$$

* '22.2.14. 이전 기간은 2.5/10,000



Q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세액공제 및 동일인 합산과세 대상인가요?

A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64, 2021.10.28.)

Q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한 경우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대상인가요?

A 창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재부 재산-678,2011.8.22.)

Q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의무를 지키지 못해 증여세 수정신고할 예정인데 신고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088)

Q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매출액 증가로 개인사업자 폐업 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A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2015-상속증여-0009)

0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 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 과세특례
취지		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경제 활력 증진	생존시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 지원
요건	당사자	60세 이상 부모 → 18세 이상인 거주자	가업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부모 → 18세 이상인 거주자
	증여대상	양도세 과세대상제외 재산 [50(100)억원 한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600억원 한도]
	기타사항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에 창업자금 사용	수증자가 증여세 과표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특례신청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과세특례		(증여세과세가액 - 5억원)×10%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 10억원)×10%(20%)
사후관리	가산세 부과	창업자금사용내역 제출 및 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분·불분명한금액×0.3%	-
	증여세 추징 (이자상당액 가산)	- 2년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적용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 - 4년이내 모두 해당 목적에 미사용하거나, 증여받은 후 10년이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5년이내 대표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 5년이내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이상 휴업·폐업 * '24.2.29. 이후 ① 대분류 내 변경, ② 대분류 이외는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업종변경 가능 - 5년이내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기간 상관없음) - 증여세액공제시 창업자금(주식)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 특례적용 받지 않는 일반세율적용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음 - 신고세액공제 적용 배제	

Ⅱ.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시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③)

01 주식·출자지분의 평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장주식(코스닥 포함)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총4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② 비상장주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02 주식 등 할증평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합니다.

가. 할증평가 대상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해당되며, 기업공개 준비 중이거나 거래소에 상장 신청한 주식 및 상장주식 중 증자로 취득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도 할증평가대상에 포함합니다.

나. 최대주주 판단

➡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다. 할증평가액 산정

➡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등 주식평가액에 20%를 가산합니다.

-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액 = (시가·보충적 평가가액) × (1 + 할증률)

라. 할증평가 제외

➡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 제29조(증자), 제29조의2(감자), 제29조의3(현물출자), 제30조(전환사채)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④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0)' 이하인 경우

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2016.1.1.이후 평가분부터)

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03 중소기업 및 일정수준 중견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앞에서 설명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창업자금의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Ⅲ. 영농상속공제 제도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營農)[양축(養畜)·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공제 중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공동경영에 의해 형성된 재산인 농지 등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상속인에 대하여는 일반인보다 추가 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01 영농상속공제 금액

➡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3①)

영농상속공제 개정연혁

구분	2016~2021년	2022년	2023.1.1. 이후
공제한도	15억원	20억원	30억원

02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가. 영농상속공제요건

1)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 영농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26년 개정)

가. 「농지법」 §2 1호 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 §5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2014.2.20. 이전 상속분은 「초지법」 §2 1호에 따른 초지

다. 「산지관리법」 §4①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28 특수산림 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

라. 「어선법」 §2 1호에 따른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 §7, 「수산업법」 §7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7① 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 및 「양식산업발전법」 §10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10①5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

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 (2015. 2. 3.상속부터)

사. 「소금산업진흥법」 §2 3호에 따른 염전(2020.2.11. 상속부터)

법인세법 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 법인의 주식 등의 범위는 상증령 §15⑤ 2호를 준용)

$$\text{영농상속재산(법인가업)} = \text{영농법인 주식가액} \times \frac{\text{(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가액)}}{\text{총자산가액}}$$

2) 피상속인 요건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①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②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5②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 ·군·구(자치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2015.2.2. 이전에는 20km) 이내에 거주하거나(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2015.2.2. 이전에는 20km) 이내에 거주하는 자

※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이 경우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②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3) 영농상속인 요건

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② 위 2)의 가) ②에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할 것

②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며,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20.2.11. 이후 상속분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한도)은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봅니다.

나) 다음의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 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4) 영농종사 및 영농종사기간 판단기준

➡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②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2 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③ 소유 어선 및 어업권·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④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28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합니다.)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추가로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26년 개정)

* 도·소매업: 3억, 제조업 1.5억 등

** 농업·어업·임업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은 제외

03 영농상속 입증서류의 제출

➡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내에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재삼46014-1179, 1999.6.17).

영농상속 제출서류	영농상속공제 신청 시 입증서류

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② 영농사실증명서류
③ 「어선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④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면허증 사본
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사본
⑥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사본
⑦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⑧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04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시 공제배제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8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 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 또는 추징합니다.

① 상증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배제(공제 적용 전)

②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증령 제16조 제10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공제 적용 후)

③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

㉠ (조세포탈)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등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회계부정) 재무제표상 변경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05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1) 사후관리사항

➡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영농상속의 사후관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기간은 제외합니다.

2) 정당한 사유

➡ 영농상속공제에 대한 상속세 추징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①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②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③ 영농상속재산(영농상속을 받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④ 영농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⑤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다만, 주식 등을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식 등을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상증법 §73에 따라 물납한 경우

- 상증령 §15⑧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⑦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영농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영농에 종사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영농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상증규칙 §6)

⑧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대체농지 취득시까지의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함).

3) 영농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시

➡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text{영농상속공제금액} \times \left[\frac{\text{영농상속받은 재산 중 처분 재산가액(상속개시 당시 평가액)}}{\text{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right]$$

➡ 2018.1.1. 이후부터는 사후관리 위반 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납부 이전에 세무서장 등이 먼저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결정한 상속세액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유발생일까지의 일수 × 상속세 부과당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3.1%) / 365



Q 피상속인이 현재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인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한가요?

A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인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은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8, 2015.1.9.)(상속개시일 농지가 아닌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속증여세과-389, 2014.10.6.)

Q 재배작물 변경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나요?

A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재배작물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변경한 재배작물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등의 범주에 속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서면-2017-법령 해석재산-2202, 2018.7.2.)

Q 법인 전환 전 개인영농 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나요?

A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사전-2022-법규재산-0922, 2022.12.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3. 20.〉

관리번호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전자우편 주소	
	④ 주 소				⑤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의 ( )
	⑥ 전화번호	(자 택)			사후관리위반신고	
		(휴대전화)			⑦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	[ ] 있음 [ ] 없음
피상속인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거 주 구 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
	⑪ 주 소					
	⑫ 상속원인	[ ] 사망 [ ] 실종 [ ] 인정사망 [ ] 기타			⑬ 상속개시일	
세무대리인	⑭ 성 명		⑮ 사업자등록번호		⑯ 관리번호	
	⑰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⑱ 상속세과세가액				영리법인 면제	유증 등 재산가액	
⑲ 상속공제액					면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⑳ 감정평가수수료					㊱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㉑ 과세표준 (⑰ - ⑱ - ⑲ - ⑳)				㊲ 공제·면제 후 납부할 세액 (㉕ + ㉖ - ㉗ - ㉘ + ㊱)		
				㊳ 가업상속 납부유예 세액		
㉒ 세율				㊴ 신고불성실가산세		
				㊵ 납부지연가산세		
㉓ 산출세액				㊶ 납부할 세액(합계액) (㊲ - ㊳ + ㊴ + ㊵)		
㉔ 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납부방법	납부·신청 일자	
㉕ 산출세액 (㉓ + ㉔)				㊷ 연부연납		
㉖ 이자상당액				㊸ 물납		
㉗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현금	㊹ 분납	
세액공제	㉘ 계 (㉙ + ㉜ + ㉝ + ㉞ + ㉟)				㊺ 신고납부	
	㉙ 증여세액공제	소계 (㉚ + 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㉚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년 월 일		
		㉛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신고인 (서명 또는 인)		
	㉜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㉝ 단기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㉞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세무서장 귀하		
	㉟ 그 밖의 공제					

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4.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5.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3. 20.〉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 가업현황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 업 연 월 일		업 종	
기준총급여액		기준고용인원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 (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 .) [ ]비상장
중견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다. 피상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영위기간		대표이사(대표자) 재직기간	
최대주주등 여부		특수관계인포함 보유주식 등 지분율	

라. 가업상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종사기간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주 소		(☎)	

마. 가업상속 재산가액

종 류	수 량(면적)	단 가	가 액	비 고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2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총급여액'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을 적습니다(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하되, 가업상속공제 당시 기준고용인원에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 해당하는 인원만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
3.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적습니다.
4.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5.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6. "마. 가업상속 재산가액"과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은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가업용 자산 명세)를 작성한 후 해당 금액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4. 3. 22.〉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④ 주 소				⑤ 전자우편주소	
	⑥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⑦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의 ( )
증여자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증여일자	
	⑪ 주 소				⑫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세무대리인	⑬ 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관리번호	
	⑯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 과세 가액	창업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⑰ 해당 증여재산 (부표 1 ⑯가액)		㉛ 신고불성실가산세		
		⑱ 가산 증여재산 (부표 1 ⑪가액)		㉜ 납부지연가산세		
	가업승계주식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⑲ 해당 증여재산 (부표 2 ⑫가액)		㉝ 자진납부할 세액 (㉗-㉘+㉛+㉜)		
		⑳ 가산 증여재산 (부표 2 ⑦가액)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㉑ 합 계[(⑰ + ⑱) 또는 (⑲ + ⑳)]			㉞ 연부연납		
㉒ 증여재산공제				현금 ㉟ 분납		
㉓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현금 ㊱ 신고납부		
㉔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㉕ 과세표준 (㉑ - ㉒ - ㉓ - ㉔)						
㉖ 세율 (10%, 20%)						
㉗ 산출세액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액공제	㉘ 세액공제 합계(㉙ + ㉚)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㉙ 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㉚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8서식] 〈개정 2024. 3. 22.〉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가. 가업현황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이사)		생년월일	
개 업 연 월 일		업종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 .) [ ]비상장
중견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다. 증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영위기간		대표이사 재직기간	
최대주주등 여부		특수관계인포함 보유주식 등 지분율	

라. 수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증여자와의 관계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주 소		(☎)	

마.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

수증일	㉮ 수량	지분율	㉯ 단가	① 주식 등 가액 (㉮×㉯)	②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업승계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가업법인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2. 가업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가업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3.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4. "마.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체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을 적습니다.
5. "마.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 ① 주식 등 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6. "마.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 ②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란은 "가업증여 과세특례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⑫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6서식] (신설 2024.3.22.)

창업자금 [ ] 특례신청서
[ ] 사용내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기본사항

수증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④ 증여자와의 관계		⑤ 전자우편주소	
증여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

2. 신청내용 (※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합니다)

⑨ 수 증 일	⑩ 재 산 종 류	⑪ 증 여 재 산 가 액	⑫비 고

3. 사용내역

증여받은 재산내역			사 용 내 역			
⑬ 수증일	⑭ 재산종류	⑮ 가 액	⑯ 사용일자	⑰ 사용용도 및 내역	⑱ 사용금액	⑲ 비 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업자금 ([ ]특례신청서, [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 기본사항"과 "2. 신청내용"만을 적습니다.
2.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 기본사항"과 "3. 사용내역"만을 적습니다.
3. "⑪ 증여재산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⑰ 사용용도 및 내역"란은 증여재산의 사용용도(예 : 사업용자산 취득,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등)를 적고, 사용 관련 증명서류(예 : 취득자산 명세, 대금지급 증빙, 주식 및 채권의 매각내역 등)를 별지에 첨부합니다.
5. "⑲ 비고"란은 취득자산 등의 거래상대방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부표1 신규고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10㎜×297㎜[중질지(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3. 21.〉

영농상속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피상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2. 영농상속재산명세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종류(코드)	소 재 지	수량 (면적, 톤수)	단가	가액
			① 합계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수 등	1주당 가액 등	가액
			② 합계	

3. 영농상속공제액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①)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③ × ⑦)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④ 총자산가액		
	사업무관 자산 가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에 해당하는 가액 제외)	
		⑤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④ - ⑤)		
	⑦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⑥ ÷ ④)		
가-3.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⑧ = ① + (③ × ⑦)]			
가-4. 영농상속공제 한도액(⑨)			**30억원**
가-5. 영농상속공제액(⑩ = ⑧ 과 ⑨ 중 적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영농사실 증명서류 1부 2. 「어선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3.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면허증 사본 1부 4.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사본 1부 5.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사본 1부 6. 영농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8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7.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9. 그 밖에 영농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농지·초지·산림지·염전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등 건축물 및 이에 딸린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항증명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책자는 2026년 5월 현재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총괄적인 내용과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개정·해석사례 등으로 내용이 책자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예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상속·증여세

발행일자 2026년 5월
발 행 처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감 수 상속증여세과장 신 상 모
집필총괄 행정사무관 서 범 석
집필·편집 국세조사관 이 태 호
국세조사관 손 기 만
국세조사관 이 다 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상속·증여세

2026. 5



함께 만들어요! 대한민국 세미래

稅美來

대한민국 세미래(稅美來)는
'납세자의 성실납세'와 '국세행정의 공정세정'으로 밝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입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월세제보는 24시간)